

「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유동근)

가. 제안이유

- 당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(2018년)을 기준으로 타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2015~2018년으로 계획하였으나, 2015년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예수금 상환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환계획을 변경하고, 통합관리 존속기한 연장(2022년까지)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
 -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설정(안 제4조)
-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
 - 보유자금 관리 근거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을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예수금 상환재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단서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제2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8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제7조(통합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을 군의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<p>제7조(통합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9조제2항----- -----.</p>